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 - 30호

『인천광역시 군·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5월 24 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군·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군·구 지역사업의 시의회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책무에 인천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 예산이 확정된 1억원이상의 군·구 지역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회의장의장(이하 “시의장”이라 한다)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(안 제3조)
- 나. 지역사업의 통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행하며, 해당부서의 장은 군·구별 지역사업을 정리하여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(안 제4조)
- 다. 지역사업의 통보 주기는 월1회로 규정(안 제5조)

라. 시장이 통보한 지역사업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
관리하며,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군·구 관련 시의원에게
통보하도록 규정 (안 제6조)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
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
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2 팩스
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
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군·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군·구 지역사업의 시의회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사업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예산이 확정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군·구 사업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군·구 현안사업 일체를 말한다.
2. “총괄부서”란 예산담당 부서를 말하고 “해당부서”는 지역사업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각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 예산이 확정된 군·구 지역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회의회의장(이하 “시의장”이라 한다)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통보) ① 지역사업의 통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한다.

- ② 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군·구별 지역사업을 정리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
제5조(통보주기) 지역사업의 통보 주기는 월 1회로 하며, 이는 변동

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.

제6조(관리) ① 시장이 통보한 지역사업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
총무담당관이 관리한다.

②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은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
군·구 관련 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료요청) 인천광역시의회는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
확인 및 세부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